

『2025년 첨단해양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』지원기업 모집 공고

포항시와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첨단해양 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자 『첨단해양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,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9월 25일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5년 첨단해양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
- 사업목적
 - 환동해 해양 신산업 육성 특화 생태계 조성
 - 친환경·디지털 기반의 첨단 해양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사업화 촉진
- 사업내용: 기술지원, 경영·판로·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
- 지원기간: 2025.10. ~ 2025.11.(약 2개월)
- 지원규모: 100,000천원
 - 10개사 내외,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한도 내(*VAT 지원 제외)
 - 기업부담금: 총사업비의 10%이상 별도 부담

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규모
기술 지원	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, 시험분석, 지식재산권, 인증, 과제기획 등	최대 10백만원 / 10개사 내외
경영·판로·마케팅 지원	디자인, 마케팅, 컨설팅, 정보조사 등	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평가 결과 기반으로 지원금 또는 지원 기업 수가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: 포항시 소재 해양자원, 해양레포츠, 해양ICT, 해양바이오 등 첨단 해양(수산) 관련 기업, 해양 전문서비스 관련 전·후방 산업

II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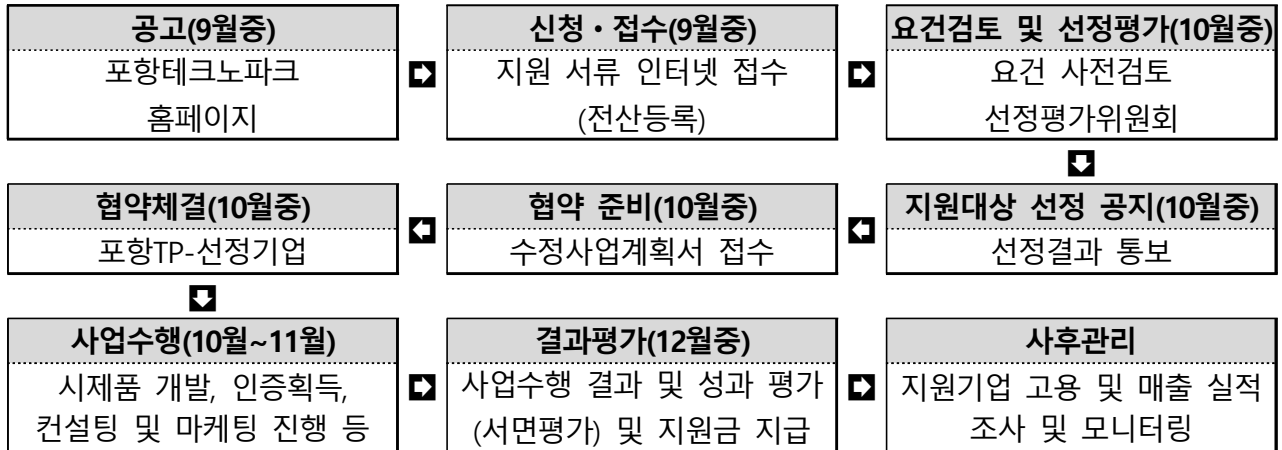
- 지원내용: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1건 이상 복수 선택 및 신청 가능
(단,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분야	프로그램	지원내용	최대 한도
기술 지원	시제품	-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,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의 상용화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(시제품 설계비, 시제품 제작비, 고도화 비용 등)	10백만원
	시험분석	-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및 테스트 - 제품 불량, 결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 -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	5백만원
	지식 재산권	-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(특허법인(변리사) 대행료, 관납료 등)	5백만원
	인증	- 제품인증, 시스템 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(인증비, 시험비(성능테스트 비용), 컨설팅 비용 등)	5백만원
	신규기술· 과제기획	- 핵심기술 선점 및 신규기술 R&D를 위한 전문가 활용 - 기술·시장 동향 등에 대한 선행조사, R&D과제 컨설팅	5백만원
경영· 판로· 마케팅 지원	제품 디자인	- 신규 제품의 제품디자인 설계 및 제작 - 기존 제품의 개선을 위한 제품디자인 설계 및 제작	10백만원
	시각 디자인	- 브랜드 네이밍, CI, BI, 상표, 포장 등 디자인 개발 및 제작	5백만원
	마케팅	- 국내외 전시/박람회 참가비 ※ 부스임차료, 부대시설사용료 등 (여비 산정 불가) - 국문/외국어 홍보 인쇄물(카달로그, 브로셔), 홍보동영상 제작, 제품매뉴얼(사양서), IR자료 등 제작 - 홈페이지, 온라인 쇼핑몰 등 신규 구축 및 리뉴얼 - SNS 노출광고, 온라인 플랫폼 등 홍보활동 지원	5백만원
	컨설팅	- 기업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(기업진단, 성장전략, 경영체계, 구조개선, 마케팅전략 등)	10백만원
정보조사	- 국내외 시장조사, 경쟁제품 동향조사, 바이어DB발굴조사 등 정보조사 및 보고서 비용	5백만원	

- 지원방법: 기업 선집행 후 성공판정 기업에 한하여 TP지원금 지급

III. 지원 절차 및 일정

○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


IV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 기간: 2025.09.25. ~ 2025.10.09.

○ 신청 방법: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<https://www.ptp.or.kr>)

※ www.ptp.or.kr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 - 온라인신청

① 기업회원가입(필수) →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→ ③ 첨부파일(신청서식) 업로드 →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

○ 제출서류

구분	서식명	비고
필수	1. 지원신청서	서식 제1호
	2.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	서식 제2호
	3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제3호
	4. 개인/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 제4호
	5. 견적서 (최종견적서 1부, 비교견적서 1부)	-
	6.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	-
	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내)	-
	8. 최근 3년간 재무제표 (홈택스 발급분)	-
	9. 최근 3년간 고용인원 증빙서류 (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)	-
해당 시	10. 지식재산권, 인증, 수상 등 기타 증빙서류	-

V.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

○ 선정평가

평가 절차	주요 내용
요건 검토	•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 사전 검토
선정 평가위원회	•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기술/제품의 경쟁력,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•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 평점 70점 이상의 기업을 최종 선정

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 가 지 표	배점
사업수행 능력(15)	신청기업의 경쟁력	• 기업 일반 현황 •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, 전문성(인증, 규격, 마크, 특허 등의 보유 정도) • 정부과제 참여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	15
기술·제품 경쟁력(30)	기술성	• 차별성, 비교우위 요소, 경쟁력 등	15
	시장성	• 시장규모, 성장 추세, 시장 진입 가능성 등	15
계획의 적정성(30)	목표의 명확성	• 목표, 내용 및 결과(산출)물에 대한 명확성	15
	추진전략의 적정성	• 추진방법 및 전략, 계획의 구체성 •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	15
지원효과성 (25)	상용화 계획의 적정성	• 최종 결과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• 제품(기술)의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 성과 및 기여	15
	파급효과	• 사업수행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• 신규시장창출, 고용창출, 매출액 증가, 수출증대 등	10
가점사항(5) ¹⁾		•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	5
합 계			105

○ 결과평가: 서면평가

- 사업 기간종료 후 일주일 이내 시행
 -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
 -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성과 달성도, 지원의 기대효과 등
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확정

1) 경상북도 포항 벤처기업 집적시설(6개소):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, 제1,4,5벤처동, 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, 첨단해양R&D센터

VI.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

구분	주요 내용
지원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부도, 휴.폐업인 경우 -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-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- 동일한 신청과제(사업내용)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.중복이 확인될 경우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타 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- 선정평가 전 신청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- 지원대상의 적격성, 필요성,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-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-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-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- 협약종료 후 일주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비 집행 증빙(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)을 함께 제출해야 함 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-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VII.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전략사업본부	김은솔 대리	054-255-2601	kes0414@ptp.or.kr